

3.1.20 대학발전자문위원회규정

제정 2002. 03. 08.

개정 2009. 09. 07.

개정 2018. 07. 26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초당대학교 대학발전자문위원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교육 및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
3.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
4. 취업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지역 사회교육 및 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
6. 기타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

제4조(기능) 본 위원회는 교육, 연구, 사회봉사, 학생지도, 취업지도 등 본교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.

제2장 구성 및 임원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총장, 부총장, 기획연구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8.07.26.>
2. 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장 또는 업체의 장, 그리고 학계, 언론계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7.26.>

제6조(임원) ①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위원장: 1인
2. 부위원장: 1인
3. 간사: 1인

②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③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간사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임원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한다.

제8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7.26.>

제3장 회의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- ③ 정기회의는 년 2회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0조(분과위원회) ①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위원회
2. 지역발전위원회
3. 문화예술위원회
4. 대학홍보위원회
5. 산학협력위원회

②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따로 정한다.

제11조(협의사항 통보)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기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